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7.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16호로 2013년 6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춤춤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식 변화가 요구 됨에 따라 지역안전 및 재난총괄, 안전문화, 안전정보, 인적·사회적 재난, 안전상황관리 등 사회안전을 총괄 수행하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구정 수행과 조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 명칭변경 : 건설국 → 안전건설국

나. 부서 명칭 변경 : 치수방재과 → 안전치수과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앙정부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 설치하고,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이를 지방 현장에서 차질 없이 구현하고, 국가의 총체적 안전 관리역량 제고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 국 명칭을 “건설국”을 “안전건설국”으로 변경하였고,
- 안 제9조에 부서 명칭을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변경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 개편방향 및 서울시의 조직에 맞추어 종합적·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서울시의 「자치구 안전기구 개편 지침(2013.5월)」에 따라 안전전담기구(국·과)의 명칭에 ‘안전’을 포함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